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입주자모집공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시 발병증상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www.hanwhaforena.co.kr/ansan2nd>)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3. 6. 1 기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여 대응 중입니다.
2. 코로나19 확진 시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 자율격리를 권고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질병관리청 권고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 및 유관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시 견본주택 관람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에 속한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시 37.5℃ 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031-520-2020)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

청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우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 (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지속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 재생 부지제공자, 장애 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전시관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 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건본주택 10:00~ 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본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haforena.co.kr/ansan2nd](http://www.hanwhaforena.co.kr/ansan2nd))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산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

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및 미 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 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무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3.11.(월)	2024.03.12.(화)	2024.03.13.(수)	2024.03.20.(수)	2024.03.22.(금)~03.27.(수)	2024.03.31.(일)~04.02.(화)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견본주택</li> <li>-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견본주택</li> <li>-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li> <li>- 문의 : ☎ 031) 520-2020</li> <li>※ 자격 서류접수, 계약체결, 예약 관련 사항은 아파트 홈페이지 참고</li> <li>※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 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 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주택과 - 6449호(2024.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4개동 총 472세대 중 일반분양 178세대  
 [특별공급 86세대(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 000083	01	053.9927	53	53.9927	19.6539	73.6466	40.9364	114.5830	29.9016	91	9	9	16	2	8	44	47	4
		02	059.9765	59	59.9765	21.1268	81.1033	45.4732	127.5765	32.9292	78	7	7	14	2	7	37	41	6
		03	074.9950A	74A	74.9950	25.7956	100.7906	56.8599	157.6506	40.9225	2	-	-	-	1	-	1	1	2
		04	074.9709B	74B	74.9709	26.5186	101.4895	56.8417	158.3312	41.2063	3	-	-	1	-	1	2	1	3
		05	084.9224A	84A	84.9224	28.8066	113.7290	64.3868	178.1158	46.1757	2	-	-	1	-	-	1	1	1
		06	084.9225B	84B	84.9225	30.0670	114.9895	64.3868	179.3763	46.6875	2	-	1	-	-	-	1	1	1
	합 계											178	16	17	32	5	16	86	92

※ 저층 우선 배정세대(17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7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각 동별로(층수, 코어에 따른 차이를 포함)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3.9927	059.9765	074.9950A	074.9709B	084.9224A	084.9225B
약식표기	53	59	74A	74B	84A	8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구분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30일 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4-08-20	2024-12-20	2025-04-21	2025-08-20	2025-12-22	2026-04-20		
53	101동 (1~4호)	2층	4	203,919,930	273,980,070	477,900,000	10,000,000	3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47,790,000	143,370,000
		3층	4	204,944,010	275,355,990	480,300,000	10,000,000	3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48,030,000	144,090,000
		4층	4	205,968,090	276,731,910	482,700,000	10,000,000	3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144,810,000
		5-9층	19	207,034,840	278,165,160	485,200,000	10,000,000	3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145,560,000
		10-19층	35	210,107,080	282,292,920	492,400,000	10,000,000	3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147,720,000
		20층이상	25	213,221,990	286,478,010	499,700,000	10,000,000	3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49,970,000	149,910,000
59	102, 103동 (1, 2, 5호)	2층	6	223,420,120	300,179,880	523,600,000	10,000,000	4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52,360,000	157,080,000
		3층	6	224,572,210	301,727,790	526,300,000	10,000,000	4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157,890,000
		4층	6	225,724,300	303,275,700	529,000,000	10,000,000	4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5-9층	12	226,833,720	304,766,280	531,600,000	10,000,000	4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53,160,000	159,480,000
		10-19층	30	230,247,320	309,352,680	539,600,000	10,000,000	4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161,880,000
		20층이상	18	233,660,920	313,939,080	547,600,000	10,000,000	4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164,280,000
74A	102, 103동 (3호)	1층	2	291,436,100	391,563,900	683,000,000	10,000,000	5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204,900,000
74B	102, 103동 (4호)	1층	2	278,165,730	373,734,270	651,900,000	10,000,000	55,190,000	65,190,000	65,190,000	65,190,000	65,190,000	65,190,000	65,190,000	65,190,000	195,570,000
	104동 (4호)	1층	1	283,755,500	381,244,500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84A	104동 (2호)	2층	1	330,863,180	444,536,820	775,400,000	10,000,000	67,540,000	77,540,000	77,540,000	77,540,000	77,540,000	77,540,000	77,540,000	77,540,000	232,620,000
		10-19층	1	340,933,300	458,066,700	799,000,000	10,000,000	6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239,700,000
84B	104동 (1호)	2층	1	328,004,290	440,695,710	768,700,000	10,000,000	6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76,870,000	230,610,000
		10-19층	1	337,989,070	454,110,930	792,100,000	10,000,000	6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집행하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강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천하며, 추천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2021. 10. 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53	59	74A	74B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	-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	-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	-	-	2	
	중소기업 근로자	2	1	-	-	-	-	3	
	장애인	경기도	1	1	-	-	-	-	2
		서울특별시	1	1	-	-	-	-	2
인천광역시		1	1	-	-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5	4	-	-	-	1	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3	-	-	-	-	8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14	-	1	1	-	3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1	-	-	-	5	
생애최초 특별공급		8	7	-	1	-	-	16	
합 계		44	37	1	2	1	1	8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b>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b>무주택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b>청약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해야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118호(2023. 2. 2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함)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공급물량에 포함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한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 12. 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9.(목)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p>-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 (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p> <p>-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p>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2023. 2. 28)] [별표3])**

- ① 군 북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북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인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단 민간택지는 9%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2.29.(목)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교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7호(2023. 2. 28.)][별표3])



-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안산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 2. 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을 접수하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천제
전용 60㎡이하	40%	60%
전용 60㎡초과 85㎡이하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천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 11. 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 시에는 주택소유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 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1억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도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정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 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합니다.</li>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거주자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5. 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b>2024.03.11.(월)</b> (청약Home 인터넷 : 09:00~ 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b>1071- 10</b>)</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4.03.12.(화) 09:00~ 17:30</b>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b>2024.03.13.(수) 09:00~ 17:30</b>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 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또는 ⑤ 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b>2024.03.20.(수)</b></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2024.03.31.(일)~2024.04.02.(화) (10:00~ 17:00)</b></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건분주택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분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b>2024.03.20.(수) ~ 2024.03.29.(금) (10일간)</b>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b>2024.03.20(수) 08:00</b>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b>2024년 03월 22일(금) ~ 2024년 03월 27일(수)</b> 6일간,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li> <li>-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li> <li>-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li>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방문예약제</li> <li>- 홈페이지</li> <li><b>(<a href="http://www.hanwhaforena.co.kr/ansan2nd">www.hanwhaforena.co.kr/ansan2nd</a>)</b></li> </ul>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서류(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li>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li> <li>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안산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li> </ul>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li> <li>※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li> <li>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li> <li>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li> <li>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li> <li>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자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li> <li>•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li> <li>•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일반공급 당첨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li> <li>•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li>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li> <li>•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li> <li>•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당첨사실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li> <li>※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li> </ul>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li> </ul>
		○	대리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전년도(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22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전년도(22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22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이하 동일) ※ 전전년도(22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전년도(22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전년도(22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전년도(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전전년도(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전년도(22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22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22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22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직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 입증 서류 목록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재산세 납부내역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조건 청약자에 한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 및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 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가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표4] 해외채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채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함.

## Ⅶ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b>2024. 03.31.(일) ~ 2024. 04.02.(화), 3일간 / 10:00 ~ 17:00</b>	<b>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 10</b>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건본주택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건본주택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
대리인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 3자)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	위임장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 행위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억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국민은행	595137- 01- 004095	(주)한화(고잔연립9구역 재건축조합)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502동 1403호 홍길동 : 5021403홍길동 / 503동 201호 홍길동 : 5030201홍길동)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여야 하고,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부여되며, 중도금은 모계좌[국민은행, 595137- 01- 004095 , (주)한화(고잔연립9구역 재건축조합)]로, 잔금은 모계좌[국민은행, 595137- 01- 004095, (주)한화(고잔연립9구역 재건축조합)]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이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인지세에 한해 1/2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제 키볼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 중 선도래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키볼출 여부,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증 발급 전 계약자(입주자)가 무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한 훼손 및 손상실, 기타 화재나 작업중 발생하는 누수사고(타세대 피해보상 포함)를 포함한 모든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약자(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입주자)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불가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금융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 적용)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 대출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사업주체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단, 당월 대출 대납 실행일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는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약식표기)	선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시(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3	확장형	12,400,000	1,240,000	11,160,000	
59		13,500,000	1,350,000	12,150,000	
74A		16,800,000	1,680,000	15,120,000	
74B		16,800,000	1,680,000	15,120,000	
84A		19,100,000	1,910,000	17,190,000	
84B		19,100,000	1,910,000	17,19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항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계약금	우리은행	1005-004-618804	(주)한화
	잔금			

- 발코니확장 계약(공급)주체 및 확장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주)한화는 시공사인 ㈜한화입니다.
- 건본주택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502동 1403호 홍길동 : 5021403홍길동 / 503동 201호 홍길동 : 5030201홍길동)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대금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위치에따라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비확장시에는 발코니 창 없이 내부 분함문만 설치되며 외부에는 위치에 따라 철제난간만 적용됩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확장형과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통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정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 하부에 위치하는 발코니 확장 세대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읍선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 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확장 포함 품목(주방가구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읍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거실우물천장은 기본제공으로 설치되며 비확장시에는 설치위치 및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읍선)

1) 시스템 에어컨 및 냉매배관 추가

[단위: 원, VAT포함]

항목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실내기 (개소)	적용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시스템에어컨 (IoT연동형) / LG전자	53	기본 일반형	2대	거실+침실 1	4,000,000	400,000	3,600,000	
		기본 고급형			4,500,000	450,000	4,050,000	공기청정 KIT 추가
		전실 일반형	4대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700,000	670,000	6,030,000	
		전실 고급형			7,700,000	770,000	6,930,000	공기청정 KIT 추가
	59	기본 일반형	2대	거실+침실 1	3,900,000	390,000	3,510,000	
		기본 고급형			4,400,000	440,000	3,960,000	공기청정 KIT 추가
		전실 일반형	4대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7,100,000	710,000	6,390,000	
		전실 고급형			8,100,000	810,000	7,290,000	공기청정 KIT 추가
	74A	기본 일반형	2대	거실+침실 1	4,500,000	450,000	4,050,000	
		기본 고급형			5,000,000	500,000	4,500,000	공기청정 KIT 추가
		전실 일반형	4대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7,700,000	770,000	6,930,000	
		전실 고급형			8,700,000	870,000	7,830,000	공기청정 KIT 추가
	74B	기본 일반형	2대	거실+침실 1	4,100,000	410,000	3,690,000	
		기본 고급형			4,600,000	460,000	4,140,000	공기청정 KIT 추가
		전실 일반형	4대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7,500,000	750,000	6,750,000	
		전실 고급형			8,500,000	850,000	7,650,000	공기청정 KIT 추가

	84A	기본 일반형	2대	거실+침실 1	4,500,000	450,000	4,050,000	공기청정 <b>KT</b> 추가
		기본 고급형			5,000,000	500,000	4,500,000	
		전실 일반형	5대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8,900,000	890,000	8,010,000	공기청정 <b>KT</b> 추가
		전실 고급형			10,200,000	1,020,000	9,180,000	
	84B	기본 일반형	2대	거실+침실 1	4,300,000	430,000	3,870,000	공기청정 <b>KT</b> 추가
		기본 고급형			4,800,000	480,000	4,320,000	
		전실 일반형	6대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알파룸	10,200,000	1,020,000	9,180,000	공기청정 <b>KT</b> 추가
		전실 고급형			11,700,000	1,170,000	10,530,000	
자녀방 냉매배관 추가	53	추가 냉매 배관	2개소 (84B:3개소)	침실 2+침실 3+(84B 알파룸)	1,100,000	110,000	990,000	시스템 에어컨 "기본 일반형" 또는 "기본 고급형" 선택 시 추가 선택 가능
	59				1,300,000	130,000	1,170,000	
	74A				1,300,000	130,000	1,170,000	
	74B				1,200,000	120,000	1,080,000	
	84A				1,300,000	130,000	1,170,000	
	84B				2,000,000	200,000	1,80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계약(공급)주체 및 공급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주)한화는 시공사 (주)한화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세대내 냉매매입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선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 침실1에만 시공됩니다(자녀방 추가 선택 가능).
- 냉매배관 위치 및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됩니다. 기 시공된 벽체 냉매매입함 위치에 대한 입주자별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등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 계획상의 이유로 유상옵션 계약 전 각 옵션 항목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녀방 냉매배관 추가는 시스템에어컨 기본형(거실, 침실1) 선택 시 가능하며, 냉매배관 추가(선택)라 함은 벽체 매립배관을 의미합니다.

2) 가전기기 옵션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세미 빌트인 냉장고 SET	세미빌트인 냉장고 SET(냉장, 냉동, 김치) + 맞춤형 냉장고장	전 주택형	5,800,000	580,000	5,220,000	LG전자 (BC1L2AA, BC1F2AA, BC1K2AAC)
빌트인오븐	빌트인 전기오븐	전 주택형	500,000	50,000	450,000	LG 전자 (MZ385EBT1)
식기세척기	빌트인 식기세척기	74A, 74B, 84A, 84B	1,300,000	130,000	1,170,000	LG전자 (DIB22S)
인덕션 쿡탑 (일반형)	파세코 일반 3구 인덕션	전 주택형	300,000	30,000	270,000	파세코 (PEC- BI310)
인덕션 쿡탑 (고급형)	LG전자 고급 3구 인덕션	전 주택형	1,200,000	120,000	1,080,000	LG 전자 (BE3GQBI)
씰링팬	씰링팬 설치(리모컨타입)	전 주택형	400,000	40,000	320,000	오성 (DCF- KS2070)
복합 환풍기	욕실 내 환풍, 제습, 드라이어 기능 복합환풍기 휴젠드	전 주택형	1,400,000	140,000	1,260,000	힘펠 (FHD3- C150P MT)
제습기	드레스룸 내 빌트인 제습	74A, 74B, 84A, 84B	1,700,000	170,000	1,530,000	힘펠 (DHV- 5PCCU) ※ 침실1 에어컨 선택 시 가능

3) 현관 중문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3연동 현관 중문 (수동)	수동 개폐 3연동 슬라이딩 중문 (AL프레임 + 비산방지 필름 접착 유리)	전 주택형	1,500,000	150,000	1,350,000	
3연동 현관 중문 (자동)	자동 개폐 3연동 슬라이딩 중문 (AL프레임 + 비산방지 필름 접착 유리)	전 주택형	2,800,000	280,000	2,520,000	

4) 가구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자녀방 불박이장A (침실2)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53, 59, 74A, 74B	1,800,000	180,000	1,620,000	
		84A, 84B	1,900,000	190,000	1,710,000	

자녀방 불박이장B (침실3)	슬라이딩 도어 불박이장	59, 74A, 74B, 84A, 84B	1,900,000	190,000	1,710,000	
프리미엄 전시형 신발장	유리도어 + 조명 적용 수납 신발장	74A, 74B, 84A, 84B	1,800,000	180,000	1,620,000	

5) 프리미엄 바닥재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거실/주방 포셀린 바닥타일	유럽산 포셀린 바닥 타일	53	1,900,000	190,000	1,710,000	
		59	2,000,000	200,000	1,800,000	
		74A, 74B	3,000,000	300,000	2,700,000	
		84A, 84B	3,200,000	320,000	2,880,000	

6) 프리미엄 월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프리미엄 월	거실, 주방, 복도의 해당 벽면 부위 디자인에 따른 시트패널 or 가구패널 or 타일 업그레이드 (주택형별 상이)	53	2,600,000	260,000	2,340,000	
		59	2,000,000	200,000	1,800,000	
		74A	3,400,000	340,000	3,060,000	
		74B, 84A	3,800,000	380,000	3,420,000	
		84B	4,700,000	470,000	4,230,000	
프리미엄 월 (프리미엄 마스터 교차선택)	프리미엄 마스터 교차 선택시 차감부위 반영	59	1,700,000	170,000	1,530,000	
프리미엄 월 (프리미엄 주방 교차선택)	프리미엄 주방 교차 선택시 차감부위 반영	74A	2,400,000	240,000	2,160,000	
		74B	3,700,000	370,000	3,330,000	
		84A	3,200,000	320,000	2,880,000	
		84B	4,200,000	420,000	3,780,000	

7) 프리미엄 조명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프리미엄 조명	거실 간접 라인등 (디밍+색온도 조절) + 침실 기능 조명	53	1,200,000	120,000	1,080,000	
	(후면 간접등 + 직부면 디밍 및 색온도 조절 조명)	59	1,300,000	130,000	1,170,000	
	74A, 74B, 84A, 84B	1,400,000	140,000	1,260,000		

8) 프리미엄 주방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프리미엄 주방	주방가구 상부장 : 플립도어 유리장식장 : (주택형별 디자인 반영시) 싱크볼 : 깊은 사각볼 후드 : 아일랜드형 스캐어후드 상판 : 세라믹 업그레이드 벽마감 : 세라믹 업그레이드 식탁등 : 각도조절 직부등 수전 : <b>AVS</b> 브랜드 니켈색상 고급형 쿡탑 : <b>LG 3구</b> 인덕션	53	4,000,000	400,000	3,600,000	
		59	4,800,000	480,000	4,320,000	
		74A, 74B	5,200,000	520,000	4,680,000	
		84A, 84B	5,900,000	590,000	5,310,000	

9) 프리미엄 욕실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프리미엄 공용욕실	유럽산 벽 / 바닥 타일 비데일체형 고급 양변기 고급형 세면대 니켈 색상 수전 및 액세서리	53	2,200,000	220,000	1,980,000	
		59	2,800,000	280,000	2,520,000	
		74A, 74B	3,000,000	300,000	2,700,000	
		84A, 84B	3,100,000	310,000	2,790,000	
프리미엄 부부욕실_카운터 탑형	74A, 74B, 84A, 84B	4,000,000	400,000	3,600,000		

	니켈색상 샤워부스 프레임 포인트 색상 하부장 세면대 부위 세라믹 상판					
프리미엄 부부욕실_일반형	유립산 벽 / 바닥 타일 비데일체형 고급 양변기 고급형 세면대 니켈 색상 수전 및 액세서리 니켈색상 샤워부스 프레임	53	2,500,000	250,000	2,250,000	
		59	3,100,000	310,000	2,790,000	

10) 프리미엄 마스터룸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프리미엄 마스터룸 (침실1,3 연계 동선 드레스룸형성)	드레스룸 + 침실3 AL 슬라이딩 도어	59	4,200,000	420,000	3,780,000	

11) 기타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동 루버장치	실외기실 자동 개폐 전동루버	전 주택형	600,000	60,000	54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계약(공급)주체 및 공급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주)한화는 시공사 (주)한화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설치 시점에 이르러 해당 제품의 생산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기술적 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질, 품귀 등의 사유 발생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합병으로 인한 제조사변경,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고, 안내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체결 후 일정 시점 이후에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불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아파트는 단일제품을 제공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옵션은 아일랜드장 또는 주방가구 하부장에 설치되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여닫이 도어 또는 서랍도어로 마감되며 차액 금액이 정산되어 반영 되었습니다. (53타입 서랍 / 기타 타입 여닫이 도어)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 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배관 인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타공이 되지 않으며 인덕션 옵션 미선택(가스 쿡탑)세대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타공이 될 수 있습니다.(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방 상판, 주방벽의 세라믹은 분절 시공될 수 있으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LG 오브제의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는 상기 공고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수납가구와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결합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구성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LG오브제 냉장고 SET 의 도어 판넬 재질, 색상은 건본주택 건립세대에 전시된 색상으로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LG 오브제 냉장고 SET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프리미엄 월 선택시 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옵션 계약시 해당 부위 확인)
- 현관중문은 시공 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건본주택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 선택시 세라믹 상판 및 벽체에 있어 본 공사 시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으며(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프리미엄 조명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 간접 라인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우물천장과 유격 다소 발생하며, 유격 치수는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조명 선택시 거실 및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건본주택 건립세대에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항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계약금	우리은행	1005-004-618804	(주)한화
	잔금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502동 1403호 홍길동 : 5021403홍길동 / 503동 201호 홍길동 : 5030201홍길동)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IX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20년 4월 29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그 인가를 접수한 날 또는 그 인가를 접수하기 위해 건축심의 등을 접수한 날 이전의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단지입니다.
- 본 단지내의 공유시설(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변경, 내부 칸막이 변경, 각 시설 등의 설비계획 및 기타 공급면적 등의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각항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형벌면적(m<sup>2</sup>)x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그 이하 부분의 단수정리로 인한 전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의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및 호수 표시, 각 시설물의 명칭,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관할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는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 장애, 분진 발생여부 등을 확인 및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이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시공사의 단지라도 각 사업의 발주자와의 시공 계약사항 및 설계 내용에 따라 시공되는 수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필히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소음측정보고서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 등으로 조망, 채광등에 불리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일 이후 인접 개별 필지 등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물 등의 신축으로 인해 향, 조망, 일조, 소음 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중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신축사업에 해당하며,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소공원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은 본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시공범위 이외의 단지 접속도로,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사용승인이 연기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통해 입주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취/등록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 하더라도 미등기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상 및 각종 금융처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외부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지면에서 약 12m 높이)이 단지 내 부지 남측 및 동측 경계부 일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주거동 저층 세대는 조망 및 채광, 통풍 등이 불리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구간 및 재료, 높이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높이 구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동 및 옥탑, 창호, 줄눈, 각종 시설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옹벽, 마감재, 식재, 단지 내 조경, 바닥포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차량 및 보행동선 등의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으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거나 추진중인 지역이 있으며, 각 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단지 주변 외부 환경(조망, 경관, 소음 등)이 계약시점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주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인근으로 종교시설 등이 인접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및 활동에 따른 소음 발생 또는 차량 및 인원의 이동이 빈번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회차로 확보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 출입을 위해 공용 도로로 외부와 통제 없이 설치될 예정이며(통제 설비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예정), 부출구(차량의 출차만 가능)는

입주자 전용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홍보용 이미지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이 분양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청약을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보관용 장소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임대차 관련 비용 포함) 일체를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 요청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 등 세부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 옹벽, 비상차량 및 보행동선 등의 위치 및 구간, 수량, 디자인, 종류 등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 바닥 포장의 구간등은 시공 시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 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청약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는 오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각 단지 경계부와 단지 내 레벨차가 발생하여 옹벽 및 데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옹벽 등의 실 시공구간, 높이, 공법,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코어별로 세대조합, 층수에 따라 승강기 대수, 속도 및 인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코어별 각 세대 접근성 및 유효 면적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는 차단기 등 차량 통행에 관계되는 시설물은 홍보용 인쇄물 등에 표현된 것과 달리 실제 시공시 그 위치 및 형태, 개수,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보안등, 옥탑 경관 조명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의 세대라도 동별, 코어별 공용부의 실제 사용 크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주거동의 형상이 상이함에 따라 공용홀에서 각 세대까지의 접근 거리 및 채광 등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층 남측 일부 도로는 상일로 도로쪽에서 단지 내로 소방용 비상차로가 구획되어 외부와 통제 없이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1층 인근에 설치될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및 분리수거장으로 인해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휘트니스 등)과 인접한 주거동에 속한 세대는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소음 등에 노출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및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공급자와의 협의에 따라 위치, 크기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근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 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실내투시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재활용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 시설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생 주차장 인근에 별도 설치 예정)은 지상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모형 등 홍보물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해당 위치가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고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전거보관소는 법령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차량 출입구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소동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향후 주변 부지 개발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경에 따른 책임이 없고, 이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케이블,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설비 관련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차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 세대 실내 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입출차 차단기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1층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 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위치, 수량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사인물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중 현장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의 저층부(1~3층)는 석재로 마감되며(단, 코어 및 일부 연결구간 도장 시공), 일부 구간은 커튼월록이 시공될 예정으로 이와 인접하거나 마주하는 세대는 빛 반사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장식용 옥탑 구조물의 높이는 구조물 안전 검토 및 태양광패널 설치에 따라 실 시공시 그 위치, 높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축뢰,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세대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및 각종 CG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등 상세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의 옥상 일부에는 태양광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며, 그 최종 설치 위치는 발전 효율, 구조물 안전 강화 등으로 인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상의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운동시설(휘트니스, G.X, 스크린골프 등)의 경우 102, 103동과 인접한 지하1층에 위치함에 해당 주거동의 일부 저층세대는 각 시설의 운영 및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동 1층 현관출의 출입동선,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인테리어 계획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증가하는 초등학교는 덕성초등학교, 중학생은 관내 북부 중학교에 학생배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를 사업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 등의 제도 활용할 수 있으며,(각 지자체 제반사항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위탁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모두 입주(예정)자 부담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품질개선, 하자발생예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어 단지 주출입구를 아파트 입주자와 공용하게 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근접하게 하역공간 및 쓰레기보관소가 별도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주차 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입주자협의회와 근린생활시설 운영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차량 동선상에 막다른 길이 있어 회차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2.7M의 유효높이(차로에 한함)로 시공될 예정이며, 지하2층은 유효높이 2.3M(차로에 한함)로 시공될 예정으로(택배차량 출입물가) 각 유효높이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각 층별 제시된 유효높이는 차로에 해당하는 높이이며 일부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동일하지 않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구획은 전기차 충전구획, 장애인 및 경차 전용 구획을 포함하여 산정 및 설치되므로 모든 세대가 동일 조건의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은 오직 충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역에 빗물처리수조, 우수펌프실 등이 설치되며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상은 공조를 위한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접한 주거동에 해당되는 세대의 조망을 불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개별 근린생활시설 점포 입주 이후 개별 설치될 수 있는 환기시설, 간판 조명 등으로 인한 냄새, 빛 공해 등에 노출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및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전면 근린생활시설 전면보도에는 벤치 등 일부 휴게 시설물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동별로 1개소(지하1층 각 동별 1개소 설치 예정이나, 제반 상황에 따라 지상 경비실내 설치될 수 있음)설치될 예정이며,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동별 세대수 대비 수량 및 코어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 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량 변경 및 위치가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ex\_태양광발전공사)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인들을 위한 (썬한화 건설부문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됨.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썬한화 건설부문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 APP이 제공됨)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무인택배,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ON'설정이 되어 있어야 함.(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 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각 동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등의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코어별 세대 수, 층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은 급속 3대, 완속 10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타입, 위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와 협의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를 통한 전기차 충전전력공급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충전방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는 59, 74A 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위치, 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건본주택, 건축물의 배치, 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 조경석 형태 및 위치, 차단기 및 문주, 방음벽,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설치 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타 관련법률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진출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용 및 완화구간의 경우 기존 도로와 연계된 도로 구매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대지레벨차이로 인한 보행자 통행 여건을 위하여 경사로, 옥외계단 및 승강기가 설치되며 각 시설별 세부계획 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유지관리 등의 책임은 해당 입주주를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부위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건물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부분의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 단지 출입구의 문주 등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자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코어별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일부 개폐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코어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동 1층에 소방법상 에어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 주,부출입구 문주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입체적 조화를 위해서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 천정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과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각 층별로 주가동 코어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등은 공동 전기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의 보행자 진출입로는 동출입구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표현된 단지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 등)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은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고객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UNIT**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장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단위세대 **UNIT**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확장형은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침실1 발코니(대피공간 포함) 및 다용도실 외측창은 단창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거실주방 유상옵션 바닥타일 등)
- 전기 배선 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수량 및 설비 수전 및 배수구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목창호, 금속도어 등),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후입할 품목으로 본 공사시 업체가 선정됩니다.
-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에만 설치되며 창쪽 중 한쪽의 창쪽에만 설치됩니다.(대피공간은 롤 방충망 설치, 살외기그릴창은 고정형 방충망 설치)
- 세대 내 거실, 침실1 발코니 외창에 한해 유리난간형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며(유리난간은 창쪽 중 한쪽의 창쪽에만 설치되며, 반대편 창쪽은 난간의 역할을 하므로 고정식으로 설치됨), 이에 따라 이사짐 이동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할 수 있고, 공용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 및 침실1(안방) 발코니,대피공간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창호 및 문의 경우 발코니 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및 마감재 등으로 채워져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① 욕실장 측면 및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거나 잔여타일로 시공됩니다.
  - ②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④ 주방가구 상부와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거나 하부장 바닥은 분진방지 도장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구성 및 제품품은 타입별 주방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의 조명 및 후드 등의 전원 연결 및 추후 수리&점검을 위하여 상부장 타공 등의 형태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위치에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통과하는 문의 유효 사이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주방쪽으로 냉장고 돌출되거나 좌우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거나 하부장 바닥은 분진방지 도장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 온수 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온수 분배기 가림판이 설치되고 본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 및 난방열량계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로 승강기 작동 소음과 진동 등이 유입될 수 있으며, 59, 74A, 74B 타입의 경우 세대 후면 등과 인접하여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는 실외기실(또는 주방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환기용 배관이 그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미관 저해 및 소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제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기 및 건조기, 실외기의 용량 및 제조사에 따른 제품별 사이즈 상이로 인하여 일부 제품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3타입은 실외기실이 협소하므로 필히 설치할 사이즈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용도실 및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다용도실은 세탁기 수전 외 별도 손빨래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및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옵션 등의 선택품목으로 설치되는 실외기 외 추가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별 개별 실외기 설치시 해당 공간 제약으로 일부 사양의 실외기는 불가할 수 있으니, 필히 입주 전 설치할 실외기와 실외기실의 사이즈를 비교 하시기 바랍니다.
- 59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의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59타입은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설치 겸용)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세대 하부가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설치되지 않습니다. (설치되지 않는 2층 세대는 발코니 또는 세대 실 벽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실외기실에 통합형으로 설치되며(실외기그릴창 설치), 대피공간의 경우 안으로 열리는 발코니 단창(단, 1~10층 세대의 경우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밖으로 열리는 창호가 설치됨)이 설치됩니다.
-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 및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침실1(안방), 또는 침실2,3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입주자 요청에 따른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신단자함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팬트리, 드레스룸, 안방(침실1) 및 타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 분전반, 전기 배선 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 관련 마감재의 제품 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월패드의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 벽걸이 TV 설치시 이질재(조적시공 부위, 경량벽체 부위, 단열재 부위 등) 접합구간 간섭으로 중심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경량 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을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을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장치는 세대 내 침실 및 욕실 문에 한하여 시공되며 본공사 시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단위세대 UNIT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수량,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욕실화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욕실장 거울 및 가구의 거울 등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칼리성, 산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터닝도어 턱은 내부 실내화 높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개폐 시 실내화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 기준 2.3m, 우물천정 높이는 2.42m이며,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실, 다용도실 등의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의 우물천장의 치수는 최상층의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동일 평형의 다른 세대 대비 높이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주방 내부로 가스배관은 인입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경우 지역난방 적용 예정으로 세대 내 별도의 개별 보일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53, 59타입의 경우 주방 빌트인 식기세척기 개별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VR 자료는 공간감, 마감재 느낌 등은 개인별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PIT공간으로 인해 실내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등은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고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안내문구 및 표시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으로 본 공사시 부착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 제품이며, 본 공사시 시스템 에어컨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설치품목인 거실 및 침실1의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일체형 조명은 기본적으로 일괄소등스위치에 의한 제어가 미적용 됩니다.
- 일괄소등스위치 복귀(OFF→ON)시 네트워크 스위치에 의한 조명은 기본적으로 OFF상태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X

##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관리예치금으로 부과하며, 관리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GX, 피트니스, 샤워실, 탈의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때 하자의 판정기준, 보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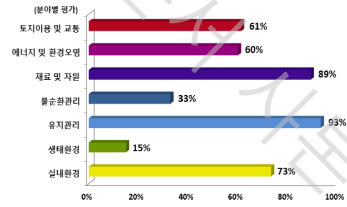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준공 전 본인증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수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연산 고잔엔빌 9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증번호 : KGBC-C-a-639
건축주 : 고잔엔빌9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 (사)한국그린빌딩협회
준공(예정)일 : 2023.05.13.	유효기간 : 2020.02.25.~사용절차완료까지
주소 : 경기도 연천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대	<b>인증 등급</b>
층 수 : 지하2층, 지상27층	인증등급 : 우수(그린2)등급
연면적 : 68,600.6976㎡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설계자 : ㈜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0년 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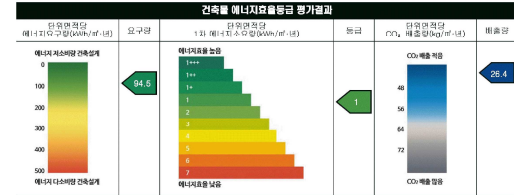
(사)한국 그린 빌딩 협 의 회 장 (인)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연산 고잔엔빌9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증번호 : 19-주에-1-0027
준공연도 : 2023년 05월 16일	평가자 : 이주영
주소 : 경기도 연천시 단원구 삼일로 589 (고잔동, 관세빌라)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7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68600.6976㎡	유효기간 : 사용중인 또는 사용될 예정인 경우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b>인증 등급</b>
설계자 : (주)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에너지 성능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효율등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²·년)
달별	0.0	0.0	0.0	0.0
년별	47.5	63.0	50.2	11.0
급탕	30.7	37.0	29.1	6.3
냉방	16.3	16.3	49.0	7.7
합계	94.5	121.2	131.7	26.4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효율등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이송, 배회, 기동, 운송, 환기, 냉동, 냉방, 조명, 급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 에너지소비량에서 건물용 전력전달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인증 등 다른 보정계수를 반영 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축에너지기술원장



2019년 07월 18일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b>KS F2292 1등급</b> 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 - 급탕 및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이 <b>KS</b>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b>1.12배</b> 이상의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 제12호 가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b>30%이상</b> 이 되도록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단위세대 내 현관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단위세대(식탁등, 간접조명 제외), 공용부, 부속등 -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 옥외등 등 <b>LED</b> 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부속동(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화장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단위세대 내 수전류(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욕조, 주방수전)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공개 함.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구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내진중요도 I	VII- 0.218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 2.7m, 지하 2층 : 2.3m	2.7m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22024- 101- 0000600	일금 육백오십일억오천삼백사십일만원정 (₩ 65,153,41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 약관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하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 호	(주)중앙엔지니어링	(주)남양기술감리단	(주)유진C&E	
금 액	1,298,122,000	434,122,760	40,000,000	70,0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고잔연립9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한화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8, 4층 1호(월피동)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법인등록번호	131471-0021671	110111-0002959

- 분양대행사 : (주)태원씨아이앤디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hanwhaforena.co.kr/ansan2nd>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 ☎ 031-520-202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 비치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